

과천도시공사 임직원복지기금 운용지침

제정 2020. 2. 5. 지침 제15호
개정 2022. 3. 7. 지침 제47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복리후생규정시행세칙 제4조와 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」 및 「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」에 따라 과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임직원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‘임직원’이라 함은 공사에 재직중인 임원(사장, 상임이사), 정규직 및 상근인력(청원경찰, 업무직, 상근직)을 말한다.

제2장 회 계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고령자 및 장애인 직원의 채용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장려금
2.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장려금
3. 기타 정부 및 관련기관 지원금 등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

제4조(기금관리) 기금은 공사 지출예산과 같이 관리한다.

제5조(회계처리) ① 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사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- ②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여 운용한다.

제6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7조(예산) 기금 관리부서장(이하 “주관부서장”이라 한다.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(사업계획)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
2. 수입·지출예산서

제8조(결산) 주관부서장은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.

1. 사업보고서

2. 예산·결산보고서

제3장 운용사업

제9조(운용사업) ① 기금의 운용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직원휴양시설 및 직원식당 운영

2. 임직원 본인 및 가족(본인·배우자부모, 배우자, 자녀)기념일 기념품 지급

3. 임원 퇴직 및 직원 정년퇴직(명예퇴직 포함)자 격려품 지급

4.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기념품 지급

5. 임직원 본인 및 가족(본인·배우자부모) 요양 및 재해 위로금 지급

6. 임직원 본인 및 가족(본인·배우자부모, 본인·배우자 조부모, 배우자, 자녀) 장례용품 지원 (개정 2022.3.7. 지침 제47호)

7.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비 지원

8. 임직원 경조사 차량운영 지원

9.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

10.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기금의 운용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

제10조(휴양시설운영 등) ① 직원휴양시설 및 직원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비 및 유지비중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.

②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경조사비) ① 임직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축하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출산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에게는 20만원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임직원 본인 및 가족(본인·배우자부모, 본인·배우자 조부모, 배우자, 자녀)상의 경우 20만원이하의 장례용품과 조화를 제공할 수 있다. (개정 2022.3.7. 지침 제47호)

④ 임직원 경조사 차량운영을 위해 유류비,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행사비) 노사화합 체육대회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

할 수 있다.

제13조(격려비) ① 임직원 본인 및 가족기념일(본인·배우자부모 생신, 본인 생일, 배우자 생일, 결혼기념일, 자녀의 입학·졸업식, 수능시험일 중 택일)에 5만원(1회)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요양 및 재해위로금) ① 임직원 본인이 공상으로 7일 이상 입원 시 30만원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임직원 본인 및 부모(본인·배우자부모)가 화재·수해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부 소·유실 시 100만원이하, 일부 소·유실 시 50만원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회계감사) ① 사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감사담당 직원이 실시한다.

부 칙(제정 2020. 2. 5. 지침 제1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개정 2022. 3. 7. 지침 제47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.